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1994. 10. 17.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4년 10월 6일

· 회부일자 : 1994년 10월 6일

다. 상정일자 : 제 107 회 임시회

· 제 3 차 내무위원회 (1994. 10. 17.)상정,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소방본부장 이 용 태)

가. 제안이유

- '92년 소방업무가 광역체제로 전환되면서 의용소방대 운영이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 소관사무로 이관됨에 따라 의용소방대장의 임용권과 예산부담을 도에서 함으로서,

- 의소대를 실질적으로 운영해야 할 군수의 예산지원 중단, 관심소홀 등으로 의용소방대 관리, 운영제반상의 문제점이 노정되어
- 의소대 운영체제를 종전과 같이 기초자치단체 체제로 개편하고, 이의 운영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일부제도를 개선, 보완

나. 주요골자

- 의소대 설치권자 조정 (제2조)
 - 소방서관할 시, 군지역은 소방서장이 소방서 미관할 군지역은 군수가 설치 → 시지역은 소방서 관할구역별로 소방서장이, 군지역은 군수가 설치
- 설치권자 조정에 따른 의소대명칭 조정 (제3조)
 - 시지역 → ○○소방서 의용소방대
 - 군지역 → ○○군 ○.○읍.면 의용소방대
- 의소대원 선발시 관할 행정구역 단위로 균형 배치 조항 신설 (제9조)
 - 의소대원 선발시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함
- 군지역의 대상 임용권자 조정 (제10조)
 - 도지사 → 군수
- 대장의 신분증명권자 조정 (제15조)
 - 대장 임용권자 조정에 따라 현행 도지사 → 군수로 변경
- 복제 지급시기 결정 (제18조)
 - 기존 대원은 매2년마다, 신규대원은 임용즉시 지급토록 명문화

○ 군지역 의소대운영 기본경비 예산 편성권자 조정 (제22조)

- 의소대장 임용권자 조정에 따라 도예산에서 군예산으로 편성토록 조정

※ 소방법상 의소대경비는 임용권자가 부담토록 개정됨 (소방법 제90조)

○ 출동수당 상향 조정 (제23조)

- 지방소방사 1호봉 봉급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의 70% 지급 (8,341원)
→ 지방소방사 1호봉 봉급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 지급 (11,961원)

○ 부녀의소대 설치구역 조정(제2조)

- 현행 시.읍.면단위 설치→면지역의 인력부족으로 시.읍지역만 설치
토록하고, 명지역은 필요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전문위원 검토요지

(전문위원 우 병 수)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
과거에 시.군에서 관장하여오던 의용소방대 운영체제가 광역체제로 전환
됨에 따라 의용소방대의 운영관리 등 소방업무 소관사무가 광역단체로
이관 되게 되었고, 의용소방대장의 임용권과 예산의 편성등을 도에서
관장하게 되므로서

이와관련하여 의용소방대의 실질적운영.관리면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었는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의용소방대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체제를 종전의 기초자치단체 체제로 개편하여
현실과의 괴리성 해소 등 일부제도를 개선 보완키 위해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 . 의소대의 설치에 있어 시,군 지역의 설치권자를 소방서장,군수로 하고
이에따른 의소대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과
- . 관할행정구역단위별 균형적인 대원의 선발규정의 신설, 대원의 임용
방법, 대원의 신분증명발급에 관한 발급권자의 자구수정 등과
- . 교육 및 훈련실시 상황점검 조문의 신설
- . 재난발생시 지급되는 출동수당을 현행 지방소방사 1호봉 봉급월액을
30으로 나눈 금액의 70%에서 30으로 나눈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서

본개정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의 활성화를 그목적으로 하는바 승인하여
준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 없음

5. 토 론 요 지 : 해당사항 없음

6. 수정안요지 : 도 원안대로 의결(참석6인, 찬성 6인)

7. 심 사 결 과 : 해당사항 없음

8. 소수의견 요지 : 해당사항 없음

9. 기타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0.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

· 신구조문대비표